

「철도사업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9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

<교통카드 기준>

구 분		현 행	조 정	비 고
기본	운임	1,250원	1,400원	150원 인상
	거리	10km까지	10km까지	변경 없음
추가운임		10~50km까지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	동일	변경 없음

※ 1회권 이용 시 100원 추가

※ 수도권 내·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의 추가운임 : 4km마다 100원

부 칙

이 고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